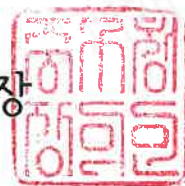


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[신당동 123-1일대 외 1개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]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1. 제한지역

연번	위 치	면적(㎡)	비고
1	신당동 123-1번지 일원	34,559.7	신당동 123-1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
2	신당동 741번지 일원	13,482.3	신당동 741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

2. 제한근거 및 사유

가. 제한근거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

나. 제한사유 :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 방지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함

3. 행위제한 내용

가. 건축물의 건축

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- 「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
나. 토지분할

다.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
※ 제한 적용 예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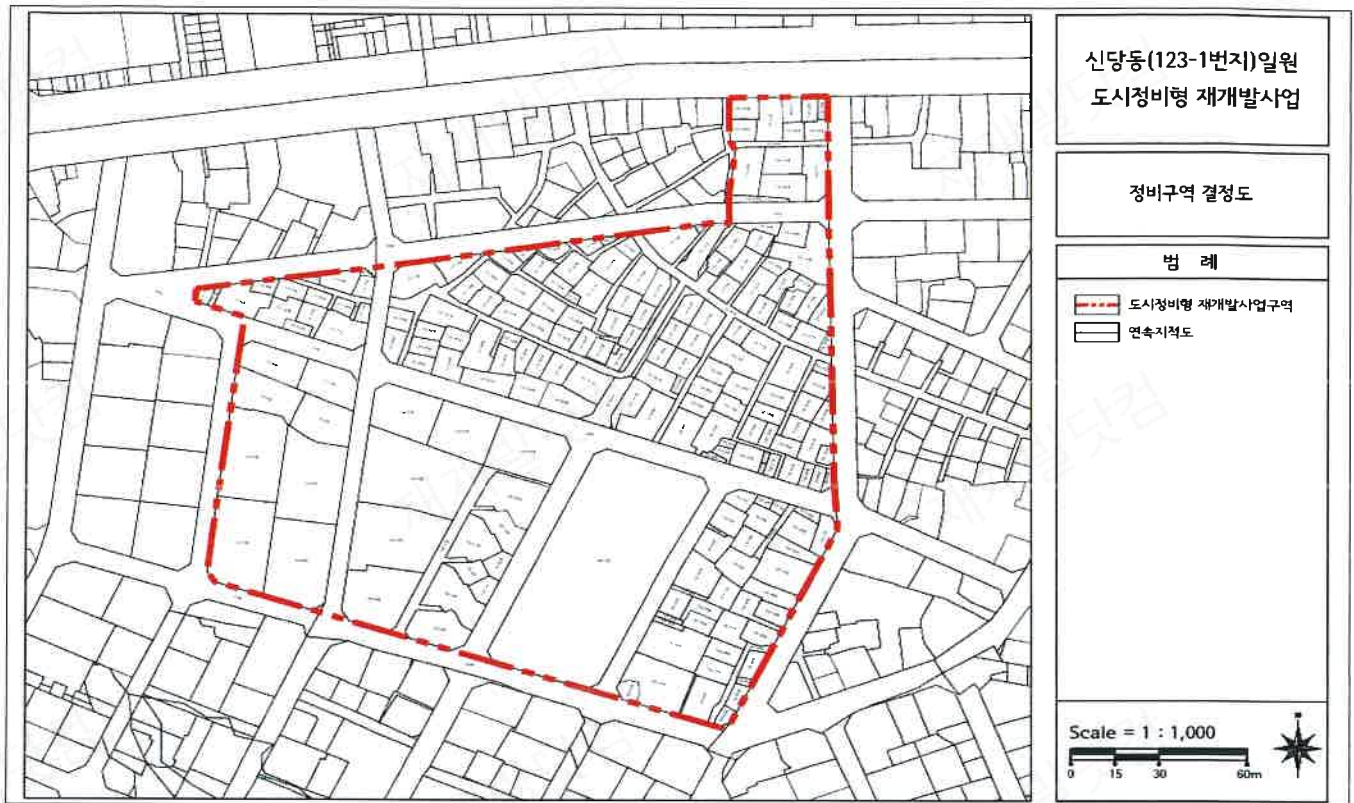
-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
-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
-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
-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
4. 제한기간 : 2023. 10. 26.부터 3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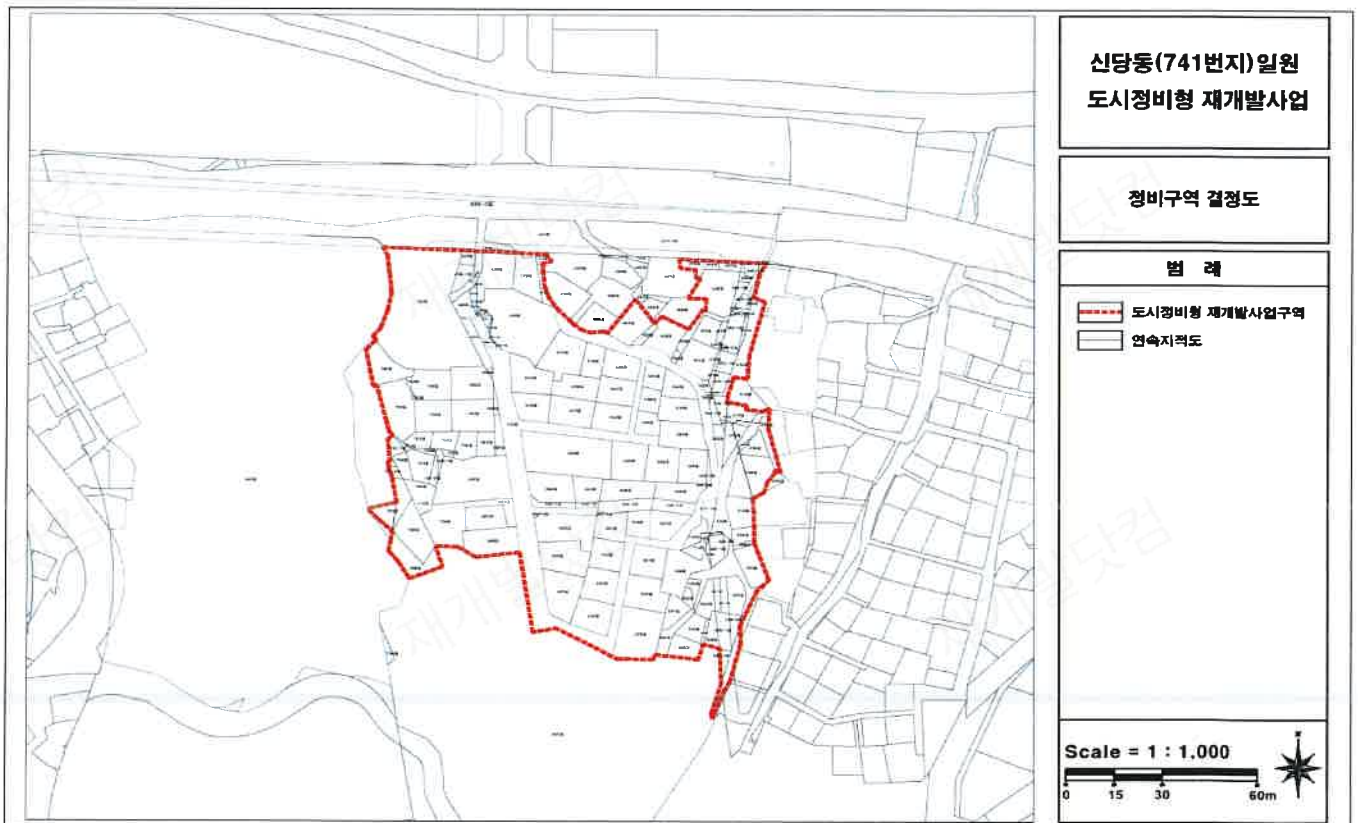
5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(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)

□ 붙임 : 행위제한 지형도면

○ 신당동 123-1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(정비사업 방식)



○ 신당동 741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(정비사업 방식)

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